

의정부지방법원 2024. 10. 30 선고 2024가단2647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10. 16.

판 결 선 고 2024. 10. 3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, 3, 4, 9, 10, 11,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‘C호’
부분 28.875㎡ 및 ‘D호’ 부분 28.875㎡를 각 인도하고,
나. 46,200,000원 및 2024. 5. 1.부터 위 가항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
1,1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강완수

별지